

문서번호	공사감독1처-12417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5.12.30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공사감독1처장	시설안전본부장	
협 조	공사감독2처장			
	공사감독3처장			

---

## 위·수탁 협약서 통합개정 및 감독자 업무지침서 제정 결과보고

---

2015.12.

# 위·수탁 협약서 통합개정 및 감독자 업무지침서 제정 결과보고

- 공사감독처 주요사업 『위·수탁 협약서 통합 개정 및 업무절차서 제정』 관련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임. (관련근거 : 공사감독1처-1005, 2015.01.30)

## □ 관련 근거

### 1) 위·수탁 협약서

- 서울특별시 공사감독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업무의 위탁)
  -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, 법인·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 할 수 있음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(제12조)

### 2) 감독 위탁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서

-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297호)
-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(기술심사담당관-11628)
- 건설공사 감독업무 실태감사 결과(감사담당관 2014. 8)
  - 건설공사 위탁감독 업무지침서 수립·운영 요구

## □ 추진 실적

- '14.10. 4 市·공사감독 위탁업무 개선방안 추진계획 수립 (도로시설과)
  - 일반공사와 상수도공사 협약서 통합 운영('14년 감사 조치사항)
  - 일반공사(3년:'12.10.5.~'15.10.4), 상수도공사(2년:'14.7.1~'16.6.30)
- 2.26 市·공단 합동실무협의체 구성 (위탁 관련부서 담당자 회의 실시)
  - 2015년 공사감독 위탁물량, 위탁방법 결정 및 위·수탁 협약서 개정방안 검토
- 3.25 「위·수탁협약서 통합 개정 및 업무지침서 제정(안)」 관련 공사감독처 정책회의 실시
- 3.31 「위·수탁협약서 및 업무지침서(안)」 도로시설과 제출

- 6.22 「건설공사 위탁감독자 업무지침서(안)」 발주청 의견조회 (도로시설과)
- 7.17 「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」 시행
- 7.28 「감독위탁공사관리」 재계약 적격자 심의
- 8.25 「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서 통합(안)」 공단·상수도사업본부 의견조회 (도로시설과)
- 9. 8 「공사감독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」 도시안전건설위 보고
- 10. 2 「공사감독업무 위수탁협약」 심사 (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)
- 10. 4 「공사감독업무 위수탁협약」 체결
- 12.28 감독위탁공사 「감독자 업무지침서」 시행보고 (도로시설과)

## □ 공사 감독업무 위·수탁 협약 체결

- 위탁대상 : 공사 감독업무
  -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, 서울시와 자치구 시비지원 건설공사(200억원 미만)
- 위탁기간 : '15.10.5 ~'18.10.4(6차 협약 : 3년)
- 시 행 일 : '15.10. 5부터
- 협약서 변경 내용
  - “갑”“을” 용어정정(시장지시사항 이행)
    - 서울시 : “갑”→“시”/ 공단 : “을”→“공단”
  - 공사감독업무 인용법령 변경
    - 감독위탁공사 :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→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
    - 감독업무 : 건설기술관리법 28조의4 →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
  - 합동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위탁대상 공사 선정
    - “시”는 “발주청”, “공단”과 협의하여 감독위탁공사를 정하여 당해 연도 2월말까지 통보
  - 설계용역(자체설계) 준공전 공단감독 참여 명시
    - 계약 심사전 감독위탁 대상 공사의 통보 및 설계도서 검토요청 (단계별 업무한계포함)
  - 일반공사와 상수도공사 협약서 통합에 따른 부칙 추가
    -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위·수탁 협약서 2016.6.30.까지 유지

## □ 감독자 업무 지침서 제정

- 적용대상 :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감독업무 위탁 건설공사
- 시 행 일 : '16. 1. 1부터
- 준 용 :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
- 업무지침서 주요 내용
  -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반영
    - 제2~3조(목적·적용) : “건설기술진흥법”→“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
    - 제4조(용어정의) : “감독위탁공사” 추가
  - 건설산업 업무추진 프로세스 개선방안 반영(부시장방침 제301호, '14.10. 1)
    - 제31조(시공확인) : “공사감독자의 의무 입회공정”추가
  -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반영(부시장방침 제318호, '13.10.17)
    - 제45조(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등) : “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성 검토항목”추가
  -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협약서 반영
    - 제61조(유지관리 및 하자보수) : “준공발주청과 합동 하자검사 실시” 추가

## □ 향후 계획

- 공사감독 업무 매뉴얼 수정 : '16. 2월

따로붙임 감독 위탁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서 1부. 끝.